

제 68호

행정명령(EXECUTIVE ORDER)

주 재난 비상 동안 파상풍 예방접종 시행을 확대하기 위한
법령 및 규제의
일시 정지 및 수정

본인은 뉴욕주의 모든 62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47호를 2012년 10월 26일에 발령하였습니다.

2012년 10월 30일에 대통령은 Bronx, Kings, Nassau, New York, Queens, Richmond 및 Suffolk 카운티에 주요 재난을 선포하였으며, 2012년 11월 2일에 대통령은 동 선포를 확대하여 Rockland 및 Westchester 카운티를 포함하였습니다.

이제, 그러므로 본인 ANDREW M. CUOMO 뉴욕 주지사는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,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행정법 2-B조의 29-a항에 의거 해당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, 2012년 10월 26일 발행된 본 행정 명령 제47호에 따라 재난 비상이 선포된 일자로부터 추가 통보시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법률들을 상황에 따라 일시 정지 및 수정합니다:

교육법 제68조 및 관련 규제, 동 조항이 교육법 제6801조 및 제6802조 제(22)항에 의거 특정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허가된 약사가 의사 또는 개업 전문 간호사의 환자 특정 또는 환자 비특정 요법과 관련하여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 내 18세 이상자에게 디프테리아 및 백일해 백신이 함유된 것을 포함하여 파상풍톡소이드 함유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;

교육법 제133조 및 관련 규제, 동 조항이 치과 의사가 의사 또는 개업 전문 간호사의 환자 특정 또는 환자 비특정 요법과 관련하여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 내 18세 이상자에게 디프테리아 및 백일해 백신이 함유된 것을 포함하여 파상풍톡소이드 함유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;

공중보건법 제30조 및 교육법 제131 및 139조와 관련 규제, 응급 의료 기사가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 내의 카운티 또는 시의 보건부의 관할 하에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조항이 응급 의료 기사가 의사 또는 개업 전문 간호사의 환자 특정 또는 환자 비특정 요법과 관련하여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 내 18세 이상자에게 디프테리아 및 백일해 백신이 함유된 것을 포함하여 파상풍톡소이드 함유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; 단, 그러한 카운티 또는 시의 보건부는 응급 의료 기사의 감독과 그러한 환자 투여 기록 유지의 책임이 있다.

교육법 제 6527조 제(7)항 및 제6909조 제(7)항과 관련 규제, 그러한 조항이 교육법 제68조에 의거 백신 투여가 인가된 약사, 교육법 제133조에 의거 면허된 치과의사, 또는 공중보건법 제30조에 의거 인가된 응급 의료 기사가 본 행정명령에 명시된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개인들에게 의사 및 개업 전문 간호사가 디프테리아 및 백일해 백신이 함유된 것을 포함하여 파상풍톡소이드 함유 백신을 위한 환자 특정 또는 환자 비특정 요법을 처방 및 지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.

2012년 11월 9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

자필로 서명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